한-싱가포르 FTA 상품의 수출



#수출통관

FTA수출통관 시에는 수출상품의 품목번호, FTA관세혜택,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한-싱가포르FTA의 효력발생일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

@FTA수출통관 시 체크리스트

· 품목번호(HSK)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FTA의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원산지결정기준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FTA관세혜택확인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원산지결정기준확인

-FTA는 체결국가 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FTA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수출 및 관련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 시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절차

1. 수출계약체결

-거래선발굴 및 신용조사가 계약 전 선행되어야 함

-계약조건(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의 확인

2. 신용장수령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에 따름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대금결제도 있음

3. 수출허가 또는 승인

-수출자유화원칙

-전략물자, 플랜트, 일시수출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 등의 수출허가, 승인 또는 신고

4. 무역금융의 이용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 등의 지원

-내국신용장발행: 수입업자의 신용장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

5. 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해상운송: 선하증권(유가증권이 효력)

-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장(단순한 화물운송장)

-복합운송: 복합운송증권

6. 통관 및 선적

-정식통관절차: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간이통관절차: 특별한 물품에 한하여 서류제출만으로 수출신고

7. 무역분쟁 및 해결

-조정절차: 강제성이 없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중재절차: 강제성이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수출상품 관세철폐계획

· 싱가포르의 양허안

-싱가포르는 FTA의 효력발생일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A제1절)

#원산지 결정기준

@개념

원산지

-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관세가격

-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다음 금액을 더해 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및 제8조).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 관세목적상 해당 상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
· 인건비또는자재비여부에관계없이포장에소요되는비용
·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다음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경우 그 가격 중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해 산출한 가격

✓ 수입품에 포함되는 재료・구성요소・부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형판・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

・ 구매자가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하나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과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
・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 위에 기재된 방법으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된 가격을 관세가격으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4조).

・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2조)
・ 해당 상품과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3조)
・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해당 수입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수입품이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 시에 또는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아래를 공제한 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1항)

✓ 통상적으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것으로 합의한 수수료나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이 수입국 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추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추가되는 금액
✓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적절한 경우,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하역비, 보험료 및 부과금
✓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해 수입국내에서 지불할 관세 및 다른 내국세

· 수입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수입품 중 어느 것도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수입 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수입 후 90일 이내에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수입품의 단위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2항)

· 다음 금액을 합한 산정가격(「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6조)

✓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및 생산 또는 다른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수입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 수출국 내 생산자가 제조한 평가대상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 판매 시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동등한 이윤과 일반경비 금액
✓ 회원국이 관세가격의 산정을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에 필요한 제반 다른 경비의 비용 또는 가격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 내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 가격

@원산지 결정의 일반원칙

원산지 결정기준

-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싱가포르 FTA 제4장(원산지규칙)과 그 부속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1-2조제1항(관세청고시 제2010-81호, 2010. 6. 10 개정·시행)].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이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 완전생산물품

·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이하 "역내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된 다음 물품은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 포함)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에 한함)
✓ 역내국의 영역 또는 선박에서 위에 기재된 물품을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

실질적 변형기준

-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해당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 한·싱가포르 FTA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적용 시,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

- 가공공정기준

· 가공공정기준이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 부속서 4C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원산지상품으로 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

✓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해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에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포함)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 관세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인 경우

✓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되거나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경우

✓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해 획득된 경우

✓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계산식

✓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조정가격

✓ 조정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다음 비용을 모두 제외한 가격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5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나.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원산지 결정의 보충원칙

상품생산과 관련된 보충원칙

- 개성공단 등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항).

· 개성공업지구 또는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하 “특정지역생산물품”이라 한다) 중 부속서 4B에 규정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라목).
· 특정지역생산물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라목).

-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 조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지만 조립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2조제1항 및 제4.6조).

✓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원산지 요건 및 부속서 4A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
✓ 원산지 상품으로 달리 규정된 상품
✓ 원산지 재료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 중간재
· 상품의 생산자는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 본문).
· 다만, 그 중간재가 역내 부가가치 비율산정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재료 자체로는 생산자에 의해 중간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7조 단서).

- 중립요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는 다음 요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8조).

✓ 연료 및 에너지
✓ 도구・형판 및 주형
✓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 설비 및 보급품
✓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 누적계산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 제1항).
・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가목).

- 최소허용수준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 내지 제24류 및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아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

호나목).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5류 내지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함)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
- 품목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이하인 물품은 그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

-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 다음의 조건 하에, 상품의 표준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2조제1항).

✓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일 것

-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를 판정하는 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2조제1항).
- 그 상품이 역내 부가가치비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2조제2항).

- 불인정공정

· 비원산지 재료가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다음을 포함한 일정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 상품이 되는 경우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6조).

✓ 건조・냉동・염수장(keeping in brine)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
✓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 분해
✓ 시험 또는 측정
✓ 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
✓ 탈피(peeling)・탈각(unshelling) 또는 박편(unflaking)・탈곡(grain removing)・뼈제거(removal of bones)・분쇄(crushing) 또는 압착(squeezing) 및 연질화(macerating)를 포함한 단순 절단
✓ 단순 혼합
✓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
✓ 동물의 도살
✓ 품질 검사 또는 분쇄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
✓ 염화 또는 가당(sweetening)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
✓ 대량 선적의 분류
✓ 위에 기재된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

수출입과 관련된 보충원칙

-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

·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가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판정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1조 제1항).

✓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의해 결정
✓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결정
✓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평균·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해 판정

· 특정한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된 경우 그 기법은 이를 선택한 자연인 또는 기업의 전체회계년도 동안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계속 사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1조제2항).

-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
· 상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산정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3조).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 수송을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4조).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A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

어졌는지 여부

✓ 그 상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의 산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 직접운송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5조).

✓ 상품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경우

✓ 상품이 한·싱가포르 FTA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해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로서 수입자가 한·싱가포르 FTA 제5.9조다호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또는 정보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념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해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협정(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

원산지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절차

발급기관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 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5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신청

- 신청자

- 한·싱가포르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2조(관세청고시 제2010-81호, 2010. 6. 10 개정·시행)].

- 신청서류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본문).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한함)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한함)

다.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4호서식]
✓ 원산지소명서(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2서식]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 한정,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확인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서).
·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산지 조사
- 조사의 원칙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FTA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면검증 또는 현지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수출자 또는 생산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포함)
✓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 서면조사
·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6조제1항).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6조제2항).

- 현지확인

·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본문).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8조제1항)

가.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오류 등의 비율 = 신청반려 건수 /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 × 100

나. 전년도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만, 과태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세법」 상의 관세포탈죄(제270조)·허위신고죄 등(제276조)· 과태료(제277조)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다.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단서).

- 현지확인 시 통지

·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7조제1항).

✓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 확인대상 내용
✓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 신청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7조제2항).

반려 및 조사의뢰

-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11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 반려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이 아닌 경우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 증명서 서식

· 한국과 싱가포르는 부속서 5B 및 부속서 5C에 규정된 2개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채택합니다. 서식은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1항).

- 증명서 발급의 효력 및 원칙

·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3항).
·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발급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6항).
·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단 한 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7항).
·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2조제8항).

- 증명서 발급 부수 등

·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10조제1항).

·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본 1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본 1부를 보관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10조제2항).

- 전자발급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 포함)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7항).

·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입력해 민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13조제1항).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일 이내)에 승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13조제2항).

·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13조제3항).

·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비서류를 첨부해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2-2-1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진술 또는 허위표시를 한 경우 자국의 관세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2항).
- 이에 더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2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1호 및 제7호).

· 한·싱가포르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한·싱가포르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

- 한·싱가포르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수정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제출요청

- 한국과 싱가포르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양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양 당사국은 규정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제1항).

제출면제

-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1항 본문).

· 상품의 총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환산해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정할 수 있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
· 수입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그 수입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입

- 다만, 1회 또는 그 이상 원산지 증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이 행해지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1항 단서).

- 예외

· 수입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수입자에게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제2항).

제출자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중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 포함)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기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본문).
-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단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정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본문).

· 원산지증명서가 서식, 발급방식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5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세관장 및 수입자에 대한 통보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별지 제8호서식(관세청고시 제2010-81호, 2010. 6. 10 개정·시행)]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관세당국에 대한 통보

- 세관장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사항에 대해 통보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를 포함)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보관 기간
- 수출자 및 생산자는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각각 다음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수출자: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 생산자: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위반 시 제재
-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호).

#원산지 사전검증

@개념

사전검증
- 사전검증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협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가서명된 것 포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수출했거나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

수출기업의 신청으로 본부세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원산지규정 준수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제1호(관세청훈령 제1409호, 2010.9.1. 제정・시행)].

본부세관

- 본부세관이란 서울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대구본부세관・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제3호).

서면검증

- 서면검증이란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 공급업체 등 사전검증 대상기업(이하 “사전검증 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초로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제4호).

현장검증

- 현장검증이란 사전검증 대상기업의 사업장 또는 공장을 방문해 회계장부・원산지 증빙서류 또는 생산시설 점검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제5호).

@사전검증의 종류

서면검증 및 현장검증

- 사전검증은 서면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1항).

・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서면검증 이외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전검증은 서면검증을 통지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검증대상기업과 협의해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제3항).

@사전검증절차

사전검증 대상기업의 선정

- 세관의 선정 또는 기업의 신청

· 본부세관장은 관할 내의 수출기업 중 연평균 수출실적·수출빈도·체약상대국의 특혜(협정)관세율·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기관발급·자율발급) 및 원산지 검증방식(직접검증·간접검증)을 고려해 사전검증 후보기업을 선정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1항).

· 특정 수출기업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사전검증 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절차와 관계없이 관할 본부세관은 해당 기업을 사전검증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수출기업으로부터 사전검증 신청 의사표시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본부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5항).

- 사전검증 안내서 송부 및 수락

· 본부세관장은 선정된 사전검증 후보기업에게 원산지 사전검증 안내서를 송부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본부세관장은 원산지 사전검증 안내서를 송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검증 후보기업으로부터 사전검증 수락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회신 받은 경우에 한해 사전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3항).

- 선정사실 통보

· 본부세관장은 사전검증 후보기업으로부터 사전검증 신청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게 사전검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4항).

· 본부세관장은 사전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검증대상물품·검증방법·검증기간 및 검증대상 증빙서류 등에 대해 사전검증대상기업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4항).

서면검증 통지 및 서류제출 요구

- 본부세관장은 사전검증을 시작하려는 때에 원산지 서면검증 통지서를 사전검증대상기업에 송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서류의 제출 요구

· 서면검증의 통지를 할 때에 사전검증대상기업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제2항).

✓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
✓ 원산지소명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 원산지증명서 사본 또는 원산지확인서 사본
✓ 송장 사본
✓ 수출신고수리필증
✓ 원재료 공급자 목록 및 원재료 소요량 명세서(원산지소명서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수출물품의 원가구성내역서(수출물품의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역내산 재료비·역외산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가액과 비중을 각각 표기한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정)

· 본부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위한 자료제출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제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전검증대상기업이 자료제출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 최초 자료제출 요구

일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1항 단서).

검증

- 서면검증

· 본부세관장은 서면검증을 할 경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2항).

✓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 각 적용대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의 기준가격, 수입원재료 기준가격 및 부가가치비율 산출 산식의 적정여부
✓ 대체가능재료를 사용한 경우 재고관리기법의 적정여부
✓ 누적기준을 적용한 경우 누적대상물품 및 누적방법의 적정여부
✓ 자가생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그 중간재의 원산지 적정여부
✓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 적정여부
✓ 직접운송원칙 및 충분가공기준 충족여부

· 추가 자료 요청

✓ 본부세관장이 검토를 한 때에 서면자료 검토 요약서를 작성하되, 제출요구 자료의 미비·누락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전검증대상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현장검증

· 본부세관장은 서면검증 자료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검증대상기업과 현장검증장소·방문일정 및 현장검증 내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장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4항).

· 현장검증의 통지

✓ 본부세관장은 현장검증을 시작하려는 때에 「원산지 현장검증 통지서」와 「현장검증 점검표(Check-List)」를 현장검증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전검증대상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 본부세관장은 현장검증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제2항).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시설·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입고 및 불출내역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 완료 후 제품포장 및 출고내역
✓ 원산지 증빙서류별 실제 보관 및 관리실태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자 지정여부
✓ 원산지자율관리업무 매뉴얼 개발 및 운영여부
✓ 원산지전산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 그 밖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무역거래계약서·적용환율·환급세액·회계장부·입출금 전표 및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결과통보

- 본부세관장은 현장검증을 종료한 때에 사전검증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 포함)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본부세관장은 사전검증결과를 사전검증대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제2항).